

 보건복지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	
	<h2>8월 18일(화) 조간 (8.17. 12:00 이후 보도)</h2>			
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				
배 포 일	2020. 8. 14. / (총 2매)			
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	과 장	이 스 란	전 화	044-202-3610
	담 당 자	서 동 오		044-202-3633
국민연금공단 가입기획부	부 장	강 원 천		063-713-5601
	담 당 자	박 주 아		063-713-5602

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덜어준다!

- 본인 신청 시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
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실시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,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.

○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,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*을 부과·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.

* 연체금이란 국민연금법 제97조에 의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프로까지 가산되는 금액

□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.

* (납부예외) '20.8월 ~ '21.7월분(최대 1년간) 연금보험료에 적용

* (연체금징수예외) '20.7월 ~ '20.12월분(6개월간) 연금보험료에 적용

-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국번없이 1355)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.
 -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,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.
-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1년간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,
- 올해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'20.3월 ~ 6월 중 최대 3개월 간의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('20. 3월~5월분)를 시행한 바 있다.
-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“이번 보험료 완화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,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